

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1999. 11. 10
시 민 도 시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1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66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99. 11. 10)
상정, 심사, 원안동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관재 도시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제5종 미관지구(합정로변)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나. 주요골자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세부지구명	위치	연장	폭원	면적	비고
결정	미관지구	제5종	합정동 416-33 ~ 성산동 279-1	1,700m	양측12m	40,800㎡	

○도시계획 입안사유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상암동 택지개발지구의 진입도로와 마포구의 중심가로 육성하고자 확장되는 합정로 주변의 무분

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고 도시미관 증진 및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확장되는 합정로변을 도시계획 용도지구(제5종 미관지구)로 지정코자 입안함.

○ 현 황

- 위 치 : 합정동 416-33 ~ 성산동 279-1호간 일대
- 합정로 규모 : B = 33m ~ 35m, L = 1,700m
- 도시계획현황 : 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98.12.24 : 합정로 확장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
- '99. 7. 2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서울시고시제 1999-203호)
- '99. 9.29 :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 방침
- '99.10.18 :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 공고 제1999-345호)
 - 신문공고 : 한국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 공람기간 : '99. 10. 19 ~ '99. 11.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본 건은 도시계획법(1999.5.24 법률제5982호) 제11조 규정에 의한 합정로변 도시계획 미관지구(제5종)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동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합정로는 합정동 416-33 ~ 성산동 279-1호 간 일반도로로 '98.10 서울시의 월드컵 행사 대비 접근도로망 확충 및 정비계획에 따라 합정로 확장계획(폭원 20m → 33~35m)을 추진하게 되었음.

'99.7.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99.7.19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이 되었고 현재 시공중인 지하철 6호선 중 3개 역사(합정, 망원, 마포구청역)가 설치 예정에 있어 향후 역세권 형성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임.

- 따라서 21세기 새서울타운 구상 및 월드컵 경기와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공간조성으로 마포의 상징적 특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미관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5종 미관지구에 대하여 설명?
- 답변요지(이관재 도시개발과장) : 다른 모든 규제조항은 해제되고 2개조항만 규정되어 있음. 2개조항은 5종 미관지구가 2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되고 건축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하는 것임.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보행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 답변요지(최승범 도시관리국장) : 실시설계용역 검토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하여 설치토록 하였음.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폭33m~35m에서 폭이 33m로 줄어든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 답변요지(최승범 도시관리국장) : 폭이 35m인곳은 청자주유소에서 성산1교 까지를 말하며 나머지는 모두 33m 도로임. 이곳이 급경사라서 폭을 35m로 넓혀서 완만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회전 차선과 좌회전 차선을 넓히기 위한 것임.
- 질의요지(윤정웅 위원) : 공람공고전에 사전에 해당의원에게 알려야 되지 않는가?

- 답변요지(최승범 도시관리국장) : 앞으로 그렇게 하겠음.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4종 미관지구와 5종 미관지구의 차이점은?
- 답변요지(이관재 도시개발과장) : 4종은 한국고유의 전통양식 등 보존지구를 말하고 5종은 1종에서 4종까지를 제외한 기타를 말함.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도시미관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선 3m만 후퇴하는 5종 미관지구로만 가능한지?
- 답변요지(이관재 도시개발과장) : 월드컵경기장 건설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주민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기위해 그러함.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도시설계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공동개발이라는 것이 극히 어렵고 매매도 잘 되지 않음.
도시설계지역으로 묶을 경우 신증을 기하기 바람.
- 답변요지(최승범 도시관리국장) : 충분히 검토하겠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합정로터리~성산1교 전체가 미관지구인지?
- 답변요지(이관재 도시개발과장) : 합정로터리~성산1교 전체가 미관지구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2m까지임.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5종 미관지구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
- 답변요지(이관재 도시개발과장) : 세금과 관계없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도로변에서 인근 이면도로까지 20m인데 12m만 미관지구로 지정하면 8m가 남는데 20m 전체를 미관지구로 하는 것이 어떤지?
- 답변요지(이관재 도시개발과장) : 더 넓히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런것임.

미관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 1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건명 : 합정로변 도시계획 미관지구(제5종)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2. 상정사유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제5종 미관지구(합정로변) 결정 (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3.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세부지구명	위치	연장	폭원	면적	비고
결정	미관지구	제5종	합정동 416-33 ~ 성산동 279-1	1,700m	양측12m	40,800㎡	

4. 도시계획 입안사유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상암동 택지개발지구의 진입도로와 마포구의 중심 가로 육성하고자 확장되는 합정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고 도시미관 증진 및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확장되는 합정로변을 도시계획 용도 지구(제5종 미관지구)로 지정코자 입안함 .

5. 현 황

- 위치 : 합정동 416-33 ~ 성산동 279-1호간 일대
- 합정로 규모 : B = 33m ~ 35m, L = 1,700m
- 도시계획현황 : 일반주거지역

6. 추진경위

- '98. 12. 24 : 합정로 확장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
- '99. 7. 2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서울시고시제1999-203호)
- '99. 9. 29 :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 방침
- '99. 10. 18 :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 공고 제1999-345호)
 - 신문공고 : 한국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 공람기간 : '99. 10. 19 ~ '99. 11. 1